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94. 4. 25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나. 제출일자 : 94. 4. 11

다. 회부일자 : 94. 4. 11

라. 최초상정일자

- 제24회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위원회(94. 4. 21) 상정 및 질의
- 제2차위원회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과장 이남용)

가. 제안이유

-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시 가축사육허가 취소와 축사이전등 조치 근거 추가
- 물가인상등 기타여건 변화 불구 인상되지 않는 분뇨 관련 영업요금 인상조정하여 경영상 문제점 해결과 민원 발생소지 해소하고 분뇨관련 영업요금 기준 단위변경 구민의 이해편의 도모
-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용량에 따른 일률부과(2단계)에서 용량을 세분화(8단계) 정화조 청소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강화 수질오염방지

나. 주요골자

- 제8조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그대로 두는 것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인정될 때에는 사육허가 취소 규정 신설

- 가축사육허가신청시 첨부서류인 주민등록등본 대신 휴대용 증명서 제시 가능
- 분뇨관련 영업 요금 기준단위 변경
 - 재래식 분뇨수집 운반 요금은 18ℓ 214원에서 10ℓ 130원, 9.4% 인상
 - 정화조 청소요금은 0.75입방미터(750리터)까지 12,350원 → 12,960원으로 4.9%인상
(초과요금도 0.75입방미터(750리터) 초과 100리터마다 893원 → 937원으로 4.9%인상)
 - 정화조 청소요금은 정화조별로 오수를 포함하여 발생한 오니의 양에 따라 개별로 산정
토록 산정방법 명시. 이 경우 청소요금에 분뇨처리 수수료와 조내 청소비 포함
- 오수 정화시설 청소요금은 정화조 청소요금 준용
- 정화조등 내부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 2단계에서 8단계 세분, 일반주택등
소요량 정화조의 과태료 부과 부담을 10만원에서 5만원 경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건 관련 법규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오수정화시설 관리등), 제19조(분뇨의 처리), 제35조(분뇨관련 영업), 제58조(과태료)에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는 93. 1. 9 조례 제250호로 공포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 조례는 건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여 사육허가의 취소, 축사 이전, 기타 유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존을 위하여 또 가축사육 허가신청시 첨부하는 주민등록등본 대신 휴대용증명서 제시로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둘째, 분뇨관련 영업요금 인상 및 요금기준 단위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그 내용은 현행, 분뇨수집, 운반요금을 18리터 단위로 214원(분뇨처리시설수수료 1리터당 1원포함)하던 것을 10리터 단위로 130원(분뇨처리시설 수수료 1리터당 1원 포함)으로 당초 1리터당 11원 88전 하는 것을 13원으로 1리터당 1원12전(9.42%)인상, 또 정화조 청소요금은 당초 기본요금 0.75 m^3 (750리터)이내 12,350원과 초과요금 0.75 m^3 초과시 0.1 m^3 (100리터)마다 893원(처리시설 수수료 1리터당 1원포함)을 하는 것을 기본요금 0.75 m^3 (750리터)이내 12,960원으로 610원(4.93%)인상하고 0.75 m^3 초과 0.1 m^3 마다 937원으로 44원(4.93%)인상하는 내용임.

셋째,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중 부과대상란 5호(나)목 정화조, 축산 폐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실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제8조 제5항 다음에 제6항 및 제7항 신설은 가축사육의 제한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제11조(분뇨관련 영업의의 요금)은 시조례로 정하여 시행해오던 것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이에 따른 조례를 93. 1. 9 제정하였으나 분뇨관련 요금은 종전 시조례 요금 그대로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실정임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내부 청소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현행 처리용량 10㎡미만과 10㎡ 이상으로 2단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은 8단계로 부과기준을 세분화한 것은 적실성이 있다고 생각됨.

그러나 3개 업체합계액이 8억이라는데 자료에 신빙성이 없는 이유?

- ◎ 이 자료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집계된 량임. 아파트는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기계식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방역수질검사 합격후는 오니처리조만 수거하면 되므로 처리비용이 10만원~20만원 정도이고 발생량에 비하면 1/5~1/20밖에 되지 않음.

5. 토론요지

가. 찬성(2명)

달서구 본 조례제정후 이제까지 요금이 인상하지 않았고 또한 분뇨수거량이 매년 6% 감소하여 3D현상으로 현재 종사원중 40대이하는 한명도 없으며 요금인상을 허용한 뒤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나. 반대(8명)

분뇨 수거업체의 계약만료일이 94년 10월이므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정확한 경영진단 없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옳지않음. 요금인상 개정조례 제상정할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업체에 경영진단을 정확히 하여 최소한의 인상분만 수용 그러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요금인상 부분반대하여 부결시킴.

6.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근거가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조사특위구성 정확한 경영진단후 인상허용

나. 수정주요골자 : 조례11조 조항만 부결하여 현행대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분뇨수거량이 매년 감소와 3D현상으로 기피업종이고 요금 인상하면 경영
수지호전으로 주민서비스 제공

9. 첨부 : 수정조례안 1부. 끝.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에 제 6 항 및 제 7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그대로 두는 것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⑦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9 조제 1 항제 1 호 “주민등록등본”을 “휴대용증명서 제시”로 하고, 동조 제5항중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명중 “영업”을 “영업의 허가”로 한다.

제11조(분뇨관련영업 요금)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 요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분뇨·수집운반요금 : 18ℓ당 214원(분뇨처리시설 수수료 11 1원포함)
- 2. 정화조 청소요금

가. 기본요금 : 0.75㎡이내 12,350원

나. 초과요금 : 0.75㎡초과시 0.1㎡마다 893원 가산

“주”용량기준은 개별정화조 용량을 말하며 조내 청소비 및 분뇨처리시설수수료(11당 1원)가 포함된 요금임.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중 부과대상란 제 5 호중 나목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표 제10호중 “법 제42조제3항”을 “법 제42조제2항”으로 하며, 동표 “주”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각각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6호로 한다.

2. 하나의 부과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만을 적용한다.
6.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하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은 법 제24조제4항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 (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⑤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분뇨관련영업) (생략)</p>	<p>⑤한다.</p> <p>제10조(.....영업의 허가) (현행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제11조(분뇨관련 영업요금) 법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요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분뇨, 수집운반요금 : 18ℓ당 214원(분뇨처리시설수수료 1ℓ당 1원포함)</p> <p>2. 정화조 청소요금</p> <p>가. 기본요금 : 0.75㎡이내 12,350원</p> <p>나. 초과요금 : 0.75㎡초과시 0.1㎡마다 893원가산</p>	<p>제11조(..... 영업의 요금) ①</p> <p>1. 분뇨·수집운반요금 : 10ℓ당 130원(처리수수료포함)</p> <p>2. 정화조 청소요금 (처리수수료 포함)</p> <p>가. 기본요금 : 0.75㎡(750ℓ) 이내 12,960원</p> <p>나. 초과요금 : 0.75㎡(750ℓ) 초과시 0.1㎡ 937원</p>	<p>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안)	수정 (안)
<p><u>“주” 용량기준은 개별정화조용량을 말하며 조내 청소비 및 분뇨처리시설 수수료(11당 1원)가 포함된 요금임</u></p>	<p>② <u>동조제1항 제2호의 정화조 청소요금은 정화조별로 발생하오니(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개별로 산정한다.</u> <u>이 경우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와 조내 청소비는 정화조청소요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u></p> <p>③ <u>동조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처리수수료는 대구직할시 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한다.</u></p> <p>④ <u>오수정화시설 청소요금은 동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제3항의 요금산정 방법을 준용한다.</u></p>	<p>현행과 같음</p>